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8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 공시 의무화(오기형의원안) ..	3

I. 개요

1.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8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기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24.

(3) 회 부 일 : 2024. 10. 25.

나. 제안이유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는 조세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자는 이유로,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오너의 자녀들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고도, 현행법에 명시된 사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가 특별한 혜택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회적 효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 나. 국세청장 등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시를 요구하거나 오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2항 신설).
- 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사후의무 이행상황 공시 또는 이미 공시된 오류의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지정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87조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 공시 의무화(오기형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u>< 신 설 ></u>	☐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공시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 가업의 상호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성명 -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짜 - 제5항제1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소유한 지분 - 제5항제4호가목에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총급여액 -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제11항 각 호의 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제8장 별칙 <u>< 신 설 ></u>	☐ 과태료 신설 공시하지 않거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 오기형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83)

□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가업용 자산 가액, 가업 종사 여부, 근로자 수 및 급여액 등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필요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시의무 위반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한도 범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상속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가업상속공제 취지의 달성을 위해 현행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자산·지분·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¹⁾를 부여하고 위반 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사후관리 의무로 ①(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이 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지되고, ②(지분유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③(고용유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이 직전 2개 연도의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④(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후관리 의무 위반으로 59건이 적발되었으며, 추정액은 541.7억원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 위반 현황]

(건, 억원)

구분	가업미종사		재산처분		고용유지 위반		당초요건 미비		계	
	건수	추정액	건수	추정액	건수	추정액	건수	추정액	건수	추정액
2019	7	135.0	1	1.6	6	23.4	1	3.7	15	163.7
2020	3	9.7	1	31.7	3	17.3	1	1.7	8	60.4
2021	1	0.4	2	8.0	4	27.0	2	1.9	9	37.4
2022	11	76.6	3	1.5	2	0.5	-	-	16	78.6
2023	4	15.2	3	8.4	4	178	-	-	11	201.6
계	26	236.9	10	51.2	19	246.2	4	7.3	59	541.7

자료 : 국세청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관리 이행상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상속인에 대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사후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

적 목적에 따라 특혜를 받은 상속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성명, 해당 상속인의 지분, 가업용 자산의 가액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